2021년도 제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1년 3월 11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지원 위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10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3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3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는 지난 12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주요 정책 운영상황과 함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문구 수정, CBDC 추진 경과 등 '여타 통화신용정책' 부분을 상세히 작성하기로 하였음. 또한 통화정책 수행여건에 대한평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과 그 주요 특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최근 들어 대부분의 고용지표에서 부진이심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서술을 보강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자산가격 상승 배경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는 공통요인에 국내에서의 저금리, 유동성 확대 등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분석에 활용한 실증분석모형의 의미와 한계를 적시하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3월 4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세계경제의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회복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명확히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참고 I-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평가'에서 국가별 서비스물가 비교 시 자가주거비 포함 여부 등 국가별 통계편제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중장기 시계에서의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 인사 및 학계의 견해와 세부 근거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참고 I-2. 최근 장기금리 현황 및 평가'에서 국내 장기금리 상승 배경 기술 시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 대외요인 외에 국내 경기회복기대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점을 균형있게 서술하고,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의 국내금리로의 파급경로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최근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대외요인의 영향을 설명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참고 I-3. 자산가격 상승 배경 및 평가'와 관련하여, 코로 나19 확산 이후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여 평가 부분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 서는 그 움직임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정책운영 방향'의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부분에서 향후 연구과제로 언급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고용구조 변화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3월)(생략)

## <의안 제11호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6호 및 제68조에 의거 공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공개시장운영규정」개정(안)(생략)